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CHINA NEWSLETTER

April, 2026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 칼럼▐

01.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노동계약 체결 실무
02. 중국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전략 (상편)

▌최신 법령/판례▐

01. [법령 해석] 중국 반외국부당 역외적용 조례] (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
02.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국무원 규정」(国务院关于产业链供应链安全的规定)
03. 「은행업 금융기관의 해외 대출 업무 관련 사항 조정에 관한 통지 (은발〔2026〕72호) 」(关于调整银行业金融机构境外贷款业务有关事宜的通知（银发〔2026〕72号))
04. 중국 수출제한 조치 동향

▌관련 업무 사례▐

▌법률 칼럼▐

01.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노동계약 체결 실무

들어가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인사노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노동계약 체결이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성문법 체계를 취하고 있고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도 유사하지만, 막상 실무에 들어가 보면 계약 체결의 시기, 형식, 효과 면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 특히 중국 「노동계약법」은 서면 계약 체결을 게을리한 사용자에게 매우 무거운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간과한 한국기업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쟁점을 정리한다.

1. 채용공고 단계에서의 차별금지

노동계약 체결에 앞서, 채용공고와 모집 단계에서부터 중국법이 정한 차별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취업촉진법(就业促进法)」 제3조 및 제26조 이하는 노동자가 민족·인종·성별·종교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실무·판례상 호구(户口)에 따른 지역차별 역시 위법한 차별로 다루어진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별도로 「장애인보장법(残疾人保障法)」이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현지 호구 소지자에 한함", "남성 우대" 등 한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표현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여성 채용과 관련하여 결혼·임신·출산을 제한하거나 이를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개정된 「여성권익보장법(妇女权益保障法)」 제43조는 채용 단계에서 혼인·출산 상황을 묻거나 임신검사를 요구하는 행위, 혼인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출산을 채용 제한 조건으로 삼는 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취업촉진법」 제27조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한 조항이 노동계약에 포함된 경우 「노동계약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조항 또는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상황, 근무조건, 보수 등에 관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광고를 한 경우, 노동자는 기망을 이유로 노동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노동계약법」 제26조, 제38조, 제46조). 한국기업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채용공고나 면접 단계에서 직급·연봉·복리후생 등을 다소 부풀려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 심각한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서면 노동계약 체결 의무와 미체결의 위험

중국에서 노동관계는 노동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성립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늦어도 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자와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동계약법」 제10조). 한국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중국에서는 형사책임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 중국법이 정한 민사적 제재가 한국보다 훨씬 가혹하기 때문이다.

서면 계약 체결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지체한 경우,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같은 법 제82조). 즉 노동자는 미체결 기간 동안 매월 임금에 더하여 동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1년이 경과하도록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이는 한국의 정규직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일단 무고정기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면 사용자는 기한 만료를 이유로 노동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고, 법정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사실상 잃어버리는 셈이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따라서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입사일에 맞추어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도록 인사 프로세스를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노동자 측이 서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분쟁시 사용자에게 2배 임금을 청구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서면 통지로써 노동관계를 종결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5조, 제6조).

주의할 점은, 노동자가 계약서 체결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로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거부했다"는 사정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노동자가 서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련을 두지 말고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노동관계를 즉시 종료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3. 단기·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시간제(非全日制) 고용이나, 재학생이 과외 시간을 활용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서면 노동계약 체결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노동법 집행 관철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 제12조는 이러한 형태의 근로를 노동관계 형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서면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4. 채용시 신분증 압수·보증금 수수의 금지

한국기업이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신분증 압수와 보증금 수수의 위법성이다. 중국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동자의 주민신분증을 압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노동행정부서가 기한부 반환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노동계약법」 제84조), 별도로 「주민신분증법」 제16조에 따라 공안기관이 경고와 함께 200위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담보 또는 기타 명목으로 노동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위반시 노동행정부서는 기한부 반환을 명하고 1인당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노동계약법」 제84조).

신원보증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에는 한국의 신원보증과 유사한 「인사보증(人事保证)」 제도가 있으나, 중국 법원은 이러한 보증계약을 일관되게 무효로 판단해 왔다. 따라서 한국에서 통용되는 신원보증서를 중국 직원에게 그대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와의 신뢰 관계를 해칠 수 있다.

5. 지사(분공사) 명의의 노동계약 체결

중국에 진출한 중국법인이 중국 다른 지역에 지사(분공사/分公司)를 두고 있는 경우, 지사 명의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지사는 회사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지만, 노동계약법상으로는 본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사용자로 취급된다. 즉 지사가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서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면 직접 사용자로서 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본사의 위탁을 받아 체결할 수 있다(「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4조).

실무적으로는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사 명의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경영 사정에 따라 지사를 폐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직원이 본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면 지사 폐쇄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사 차원의 재배치 또는 별도 협상을 통한 종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지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지사 폐쇄 자체가 노동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가 한결 간명해진다.

6. 노동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노동계약법」 제17조는 노동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사용자의 명칭·주소 및 법정대표자(또는 주요 책임자), ② 노동자의 성명·주소 및 신분증 번호, ③ 노동계약 기한, ④ 업무 내용과 업무 장소, ⑤ 업무시간 및 휴식·휴가, ⑥ 노동보수, ⑦ 사회보험, ⑧ 노동보호·노동조건 및 직업 위해 방지, ⑨ 법률·법규가 정한 기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다만 위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보수나 노동조건의 약정이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재협상을 할 수 있고, 협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의 규정을,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임금 동일 보수 원칙」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18조).

여기서 사용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노동계약 기한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사소한 누락이 결과적으로 정규직 채용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기한 조항을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 외에도 수습기간, 교육훈련, 비밀유지, 경업금지, 보충보험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핵심 인력 보호가 중요한 업종일수록 이러한 임의적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집단계약 또는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개별 노동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면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마치며

중국의 노동계약 법제는 노동자 보호에 강하게 기울어져 있고, 사용자에게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의 민사적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서면 계약 미체결시의 2배 임금 지급 의무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간주 규정은 한국기업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자,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가장 큰 손실로 이어지는 항목이다. 채용 단계에서부터 계약서 양식과 내부 프로세스를 중국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분공사 운영 구조나 향후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계약 설계를 해 두는 것이 중국 현지 인사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02. 중국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전략 (상편)

라이선스 유형 선택과 대상 권리의 사전 정비

서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소비 시장인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사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라이선스 계약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수단을 확보해 두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기술 유출 방지와 사업 연속성을 좌우하는 분수령입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등록 절차, 로열티 송금에 수반되는 세무 이슈, 나아가 개량기술의 귀속 문제까지 모든 국면을 미리 짚어두어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 시리즈에서는 라이선스 유형별 법적 성격과 선택 기준, 계약서 작성 시 핵심 체크포인트, 그리고 침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4 대 구제 경로를 실무 관점에서 총 3 편에 걸쳐 정리합니다. **제 1 편에서는 라이선스 유형의 선택과, 계약 논의에 앞서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대상 권리의 중국 내 보호체계**를 다룹니다.

1. 라이선스 유형의 이해와 전략적 선택

중국 전리법(专利法)과 상표법(商标法)은 라이선스를 **독점 실시허락(独占许可), 배타적 실시허락(排他许可), 통상 실시허락(普通许可)**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침해 시 소송 제기 권한의 귀속 주체와 라이선스 비용이 달라집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유형	실시 권원	소송 제기권	비용 수준
독점 실시허락	라이선시만 실시 (라이선서도 실시 불가)	라이선시 단독 제기 가능	가장 높음
배타적 실시허락	라이선서와 라이선시만 실시	라이선서와 공동 제기가 원칙. 라이선서가 제소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시 단독 제기 가능	중간
통상 실시허락	복수 라이선시에게 허락 가능	단독 제기 불가 (권리자와 사전 협의 필요)	가장 낮음

실무 권고

라이선스 유형은 침해 발생 시 단독 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사업 전략과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독점 실시허락**은 라이선시가 독자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신속한 권리 구제에 유리합니다.
- **통상 실시허락**은 라이선시가 단독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권리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만큼 대응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 한국 본사의 입장에서는 중국 현지 파트너에게 **독점 실시허락**을 부여하면 본사 스스로도 해당 지역에서 실시 권능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향후 직접 진출이나 복수 파트너 전략을 염두에 둔 기업이라면, 본사의 실시 권능을 유지하면서 제 3 자에 대한 추가 허락만 제한하는 **배타적 실시허락**이 보다 유연한 선택지가 됩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2. 라이선스 대상 권리의 중국 내 권리 확보

라이선스 계약 논의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이 중국 내에서 어떤 형태로 보호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유형에 따라 권리 발생 요건과 라이선싱 실무 대응이 상이하므로, 각 권리별 특성에 맞춘 사전 정비가 필요합니다.

① 상표 — 중국 내 직접 등록이 사실상 필수

상표권은 등록주의를 채택한 중국법상 중국 내 등록이 있어야 비로소 배타적 권리로서 보호됩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통해 중국을 지정국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하지만, 실무상 마드리드 루트로 확보된 국제등록만으로는 중국 내 라이선스 관계를 원활히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CNIPA 의 라이선스 备案 절차, 세관의 지재권 备案, 침해소송에서의 권리 입증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중국 상표국이 발급한 **중국 상표등록증 원본**이 사실상 요구되는데,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서류 확보에 시간과 절차적 번거로움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라이선싱·프랜차이징을 예정하고 있다면, 마드리드 루트와 병행하여 **중국 내 직접 출원(CNIPA 직접 출원)**을 확보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② 특허 — 해외 특허 자체도 라이선스 대상은 되나, 중국 등록 없이는 실효성 확보 곤란

특허의 경우 해외(한국·미국·EU 등) 등록 특허 자체를 라이선스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컨대 한국 특허권자가 중국 라이선시에게 "한국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고, 라이선시가 해당 기술을 중국 내에서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구조 등에서는 해외 특허의 라이선싱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다.

그러나 **중국 내 제조·판매·사용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한국 특허는 중국 내에서 어떠한 배타적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즉 중국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①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제 3 자에게 기술을 유출하더라도 라이선서가 중국 내에서 권리 기반의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② 제 3 자의 모방·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 내 권리 행사가 봉쇄되며, ③ 라이선시 입장에서도 "이 라이선스가 중국 내에서 실질적 독점을 담보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라이선스의 상업적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실시를 예정한 특허는 반드시 **중국 직접 출원 또는 PCT 중국 진입(국내단계 진입)**을 통해 현지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 라이선스의 실효성이 담보됩니다.

③ 저작권 —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나, 실무상 등록의 이점

저작권은 상표·특허와 달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중국 저작권법 제 2 조 및 베른협약)**. 따라서 한국에서 창작된 소프트웨어, 웹툰·캐릭터, 영상물 등은 별도 등록 없이도 중국 내에서 저작권으로서 보호되며, 라이선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중국 저작권보호센터(CPCC) 또는 중국판권보호센터에 저작권 자발등록을 해 두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그 이유는 ① 침해소송·행정단속·세관 备案 단계에서 저작권 등록증이 권리 존재와 권리자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간명한 증거로 기능하고, ② 등록 없이는 창작 시점·창작자 입증을 위하여 창작 원본 파일, 수정 이력, 발표·공개 이력 등 상당한 추가 증거 제출이 요구되며, ③ 특히 세관 备案과 온라인 플랫폼(타오바오·틱톡 등)의 침해 신고 절차에서는 등록증 제출이 사실상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④ 영업비밀·노하우 — 비등록 권리로서 라이선싱 가능, 다만 계약적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영업비밀(营业秘密), 노하우, 미공개 기술정보 등은 그 본질상 **등록이 불가능한 권리**이지만, 엄연히 라이선싱 대상이 됩니다. 중국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 제 10 조 제 4 항 및 영업비밀보호규정(商业秘密保护规定, 2026 년 6 월 1 일 시행 예정)은 영업비밀을 ① 공지성 결여(不为公众所知悉), ② 상업적 가치(具有商业价值), ③ 권리자의 합리적 비밀유지 조치(经权利人采取相应保密措施)라는 세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라이선싱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등록된 권리와 달리 **"비밀성"이 상실되는 순간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① 비밀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Schedule·Exhibit 형식 권장), ② 라이선시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NDA) 부과, ③ 접근권한 제한(need-to-know 원칙)과 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 의무, ④ 계약 종료 후 자료의 반환·폐기 및 확인서 징구, ⑤ 위반 시 징벌적 위약금 조항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적 보호장치의 충실성이 곧 "합리적 비밀유지 조치" 요건의 충족 여부와 연결되어, 추후 침해 발생 시 영업비밀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합니다.

⑤ 소결 — 권리별 맞춤형 사전 정비

요컨대, 라이선싱을 예정하는 한국 기업은 **(i) 상표·특허는 중국 내 직접 등록을 확보하고, (ii) 저작권은 자발등록을 병행하며, (iii) 영업비밀은 계약적 보호장치와 내부 보안 체계를 정비**하는 3 중 접근을 통해 라이선싱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정비가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은 분쟁 발생 시 권리 입증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 제 2 편 예고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라이선스 범위, 기간, 품질관리 조항의 세부 설계

• CNIPA 备案의 실무적 중요성 — 특히 라이선시 지위 보호를 위한 장치

• 개량기술 귀속 조항의 유효성 경계선 — Grant-back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최신 법령/판례▐

01. [법령 해석] 중국 반외국부당 역외적용 조례](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

가. 핵심 요약

2026 년 4 월 7 일, 중국 국무원은 <반외국부당역외적용조례(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이하 "조례")를 국무원령 제 835 호로 공포·시행하였습니다(총 20 개 조문).

본 조례는 2021 년 시행된 <반외국제재법>이 권한만 명시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외국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한 중국의 대응 메커니즘을 식별 → 차단 → 반제의 3 단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핵심 제도는 ① 부당역외적용 조치의 공식 식별 절차, ② 식별 공고 시 일반적 집행 금지 의무 및 사법부 승인 시 면제 절차, ③ 외국 조직·개인 대상 악의실체 명단 등재 제도, ④ 중국 법체계 최초의 금지령(禁执令) 발동권한입니다. 위반 시 효과로 데이터 cross-border 송수신 제한이 명문화된 점도 한국 기업의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 조례의 주요 내용

(1) 부당한 역외적용의 식별 (제 6 조)

조례 적용의 출발점은 외국 조치가 "부당한 역외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식별입니다. 식별 주관은 국무원 사법부이며, 다음 요소를 종합 고려합니다.

- 국제법 및 국제관계 기본 준칙 위반 여부
- 외국이 관할하려는 행위와 그 외국 사이의 연결점이 적절한지 여부
- 중국 주권·안전·발전이익 또는 공민·조직 권익 침해 여부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식별은 사법부 직권으로 개시되거나, 조직·개인이 식별 작업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식별 결과는 공고됩니다. 한국 기업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미국 OFAC 의 2 차 제재, 미국 EAR 및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UN 안보리 결의 없는 일방 제재 등이 이 식별의 주요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집행 금지 의무 및 면제 신청 절차 (제 6 조 후단)

특정 외국 조치가 부당역외적용으로 식별·공고되면, 어떠한 조직·개인도 해당 외국 조치를 집행 또는 협조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조례의 차단 의무입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부득이 집행 또는 협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법부에 ① 사실관계, ② 이유, ③ 집행 또는 협조 집행이 필요한 범위를 제출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특정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 6 조 후단). 외국 제재 준수가 불가피한 한국 기업에게 합법적 출구가 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3) 국가 차원 반제 조치 (제 7 조)

중국 정부는 외국의 부당역외적용 행위에 대해 위험등급을 평가한 뒤, 외교·외사, 출입국, 무역, 투자, 국제협력, 대외원조 등 분야의 반제·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4) 악의실체 명단(恶意实体清单) 제도 (제 8 조)

외국 부당역외적용을 가담하는 외국 조직·개인은 국무원 관계부처의 결정으로 악의실체 명단에 등재되며, 등재된 자에게는 <반외국제재법> 및 그 실시규정에 따라 다음 조치가 가능합니다.

- 비자 거부, 입국 금지, 비자 취소, 출국 명령, 추방

- 중국 내 근로·체류·거주 자격의 취소·제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 동산·부동산 및 기타 재산의 압류·동결

- 그 밖에 국무원 관계부처가 결정한 조치

(5) 금지령(禁执令) 제도 13 조

본 조례에서 가장 주목할 신설 제도입니다. 외국의 부당역외적용 조치를 집행 또는 협조 집행하는 조직·개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직접 그 행위를 멈추라는 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구조로, 중국 법체계에 처음 명문화된 도구입니다. 발동 대상에는 중국 내 외자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위반 시 법적 효과 (제 17 조, 제 18 조)

반제·제한 조치 또는 금지령을 위반하거나 회피한 경우 다음 조치가 가능합니다.

- 정부조달·입찰·물품 및 기술 수출입·국제서비스무역 활동의 금지·제한

- 중국 역외로의 데이터·개인정보 송수신 금지·제한

- 출입국 및 중국 내 체류·거주의 금지·제한

- 벌금 부과

- 시정명령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도 별도로 추궁됩니다(제 18 조). 데이터 송수신 제한이 위반 효과로 명문화된 점은, 본 조례가 <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과 결합하여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7)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 19 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본 조례는 일반법 성격을 가지며, 반부패·반독점·반부정당경쟁·수출통제·데이터안전·사법협조 등 영역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영역별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실제 적용 양상은 <수출관제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영역별 법령과의 결합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본 조례 시행으로 한국 기업이 새롭게 직면하는 위험은 본 조례의 구체적 조문에서 직접 도출됩니다.

(1) "협조 집행"의 범위 (제 6 조 후단) — 미국·EU 의 제재 또는 수출통제를 준수하기 위해 중국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식별 공고 이후에는 협조 집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금지령 발동 또는 악의 실체 명단 등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이전 금지 (제 17 조) — 위반 효과로 중국 역외로의 데이터·개인정보 송수신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 한국 본사로의 데이터 이전이 직접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 운행 데이터, 반도체 설계 도구 사용 기록, 금융권 고객 확인 정보 등 민감 영역은 특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3) 거래 단절 사유 기재의 중요성 (제 6 조와 제 8 조 연계) — 미국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종료 시 그 사유를 "사업적 판단"으로 기재할 것인지 "외국 제재 준수"로 기재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중국 당국의 식별·금지령·명단 등재 절차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4) 면제 절차의 활용 가능성 (제 6 조 후단) — 사법부 면제 신청 절차는 외국 제재 준수의 합법적 출구가 될 수 있으나, 운용 실태는 미·중 정세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첫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향후 동향

본 조례는 즉시 시행되었으나, 식별 공고·금지령·악의실체 명단 등재 사례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6~12 개월 내 첫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실제 운용 양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국무원 규정」(国务院关于产业链供应链安全的规定)

동 <규정>은 산업망·공급망의 안전 리스크를 예방하고 회복력 및 안전 수준을 제고하여 경제·사회의 안정과 국가 안보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총 18 개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골자는 ① 산업망·공급망 안전 업무의 기본 원칙 수립, ② 관련 안전 제도 및 조치의 정비, ③ 대응 조치 및 역외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무원 관련 부처 및 성급 인민정부의 직책을 명시하여 안전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정비하고, 핵심 분야에 대한 안전 보장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리스크 예방 및 비상 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핵심 분야의 원자재·기술·설비·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3.「은행업 금융기관의 해외 대출 업무 관련 사항 조정에 관한 통지 (은발〔2026〕72 호)」(关于调整银行业金融机构境外贷款业务有关事宜的通知（银发〔2026〕72 号）)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 발표한 동 <통지>는 해외 대출에 관한 거시건전성 조정의 일환으로, 국내 외국인 단독 투자 은행, 중외 합자 은행 및 외국 은행의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국내 지점에 적용되는 해외 대출 레버리지 비율을 기존 0.5 에서 1.5 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금융기관이 경내(대륙)에 설립한 은행 기관에도 준용됩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은 3 에서 3.5 로 상향되었으며, 산출된 해외 대출 잔액 상한이 100 억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한을 100 억 위안으로 확정합니다. 또한, 국내 은행이 해외 은행에 대한 자금 융통 방식으로 1 년 이상의 내외화 대출을 간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해외 은행 소재 국가·지역의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04. 중국 수출제한 조치 동향

중국 정부는 비료 및 화학 원료의 내수 안정화를 목적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염화암모늄의 수출이 4 월 15 일부로 중단되었으며, 무수암모니아 및 황산암모늄에 대해서도 5 월 초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및 관련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관련 업무 사례▐

• 반도체 설비 제조 기업 F 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자문

• 바이오 기업 B 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자문

• 러시아 대기업을 대리하여 중국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선스 전략 자문

• 웹툰 작가를 대리하여 중국 기업과의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자문

법무법인(유한) 지평 상해대표처

작성자: 손덕중 중국변호사 (Equity Partner)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상해 사무소